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9331호, '23.4.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 방재전문인력의 자부심 제고를 위하여 직인 명의를 변경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1)

- 1) 제1호 다목에 단서를 신설하여, 행정처분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2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반영하지 않도록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

- 1) 등록 신청서 등록사항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신설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의2)

- 1) 등록증 업무분야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신설

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 1) 인증서 직인을 '수탁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앞쪽,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상호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설립일	
	주소 전화번호(FAX, E-mail):		

등록사항	업무 분야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업무 ☐ 1) 풍수해 부문 ☐ 2) 지진 부문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기술인력 총 () 명 기술자격자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력·경력자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제26조의2에 따른 수수료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제 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E-mail):

업무 분야

-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 ☐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 ☒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 ☐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업무
 - ☐ 1) 풍수해 부문
 - ☐ 2) 지진 부문
-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록 연월일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제 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인증분야 :
최초 발급일 :

위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른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시험에 합격하였기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 장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후략)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서 신설>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 ----- ----- (후략) 다.----- ----- ----- ----- ----- ----- ----- <u>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지난 처분 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u>